의 안 번 호	1835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 출 일 자 : 2021. 11. 11.(목)
○ 제 출 자 :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11. 11.(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12. 2.(목)

2. 제안이유

○ 중구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조례 중 노인복지기금 조항을 삭제하며 제명 등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 폐지로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기한 명시 없는 자활기금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을 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여짐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복지에 관련된 기금 조문을 삭제하며, 기금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을
자활기금 내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음
상위법령 등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